

2025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5년 12월 11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김종화 위원
이수형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여자	김언성	감사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장정수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이지호	조사국장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주재현	외자운용원장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상민	법규제도실 부실장	허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7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제4호 및 제65조에 따라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임시 적격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적격 대출채권 요건, 대출채권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규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대출채권 담보 취득 및 관리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손실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 산정 등 위험관리방안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조사, 내부모형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담보인정비율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위험관리장치를 세칙 등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측면도 균형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홈페이지 규정 제정 예고, 은행권 간담회, 학계와의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의 효과와 비용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대출채권 담보수취제도는 운영상 세부사항이 중요한 만큼 이미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대출채권 담보 활용에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면담 등을 통해 대출채권 정보 수취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격담보 범위와 담보인정비율 설정시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유념하여 살펴보겠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생략)